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32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· 서영석 ·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65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, 제165조의20, 제203조제1항 및 제7항, 제211조제2항, 제216조제3항, 제217조의6제2항, 제221조제6항, 제239조제1항제1호, 제249조의18제2항)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5조의1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165조의20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203조제1항 및 제7항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211조제2항 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216조제3항 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217조의6제2항 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217조의6제2항 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221조제6항 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1. 재무상태표

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5조의12(이익배당의 특례) ①	제165조의12(이익배당의 특례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	4
<u>대차대조표</u> 상의 순자산액에서	<u>재무상태표</u>
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	
을 한도로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해당 결산기의 <u>대차대조표</u>	⑤
상의 순자산액이 「상법」 제4	
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	
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	
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	
니 된다.	<u>.</u>
⑥ 해당 결산기의 <u>대차대조표</u>	⑥ <u>재무상태표</u>
상의 순자산액이 「상법」 제4	
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	
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	
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	
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	
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	
액(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	
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	
배당액의 합계액)을 배상할 책	

임이 있다. 다만,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.

⑦ ~ ⑨ (생 략)

제165조의20(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)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[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(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]이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(性)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203조(청산)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

<u>.</u>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제165조의20(이사회의 성별 구성
에 관한 특례)
<u>재무상태표</u>
제203조(청산) ①
- <u>재무상태표</u>

여야 한다.

- ② ~ ⑥ (생 략)
- ⑦ 청산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<u>대차대</u>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,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한다.

제211조(준용규정) ① (생 략)

② 제202조(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), 제203조(제2항을 제외한다), 제204조는 투자유한회사의 해산·청산 및 합병에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주"는 "사원(법인이사인 사원은제외한다)"으로, "투자회사"는 각각 "투자유한회사"로, "주주총회"는 각각 "사원총회"로, "법인이사 및 감독이사"는 "법인이사"로, "청산인 및 청산감독인" 및 "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"은 각각 "청산인"으로, "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

 .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⑦
<u>재무상</u>
태표

제211조(준용규정) ① (현행과 같
<u>ㅇ</u>)
②
재무상태표

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 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그 등 본을"은 "재산목록과 <u>대차대조</u> 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"로, "제201조제2항 단서"는 "제210 조제2항 단서"로, "주식"은 "지 분증권"으로 본다.

제216조(준용규정) ①·② (생략)

③ 제202조(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), 제203조(제2항을 제 외한다) 및 제204조는 투자합 자회사의 해산·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 주"는 "사원(업무집행사원은 제 외한다)"으로, "투자회사"는 각 각 "투자합자회사"로, "주주총 회"는 각각 "사원총회"로, "법 인이사" 및 "법인이사 및 감독 이사"는 각각 "업무집행사원" 으로, "청산인 및 청산감독인" 및 "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" 은 각각 "청산인"으로, "재산목 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"은

재무상태
<u> </u>
과 같음)
③
<u>재무상태표</u>

"재산목록과 <u>대차대조표</u>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"로, "제201조 제2항 단서"는 "제215조제3항"으로, "주식"은 각각 "지분증권"으로 본다.

제217조의6(준용규정) ① (생 7 략)

② 제202조(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), 제203조(제2항은 제 외한다) 및 제204조는 투자유 한책임회사의 해산·청산 및 합 병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주"는 "사원(업무집행자인 사원은 제외한다)"으로, "투자 회사"는 각각 "투자유한책임회 사"로, "주주총회"는 각각 "사 원총회"로, "법인이사 및 감독 이사"는 "업무집행자"로, "청산 인 및 청산감독인"및 "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"은 각각 "청 산인"으로, "재산목록과 대차대 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 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등본을"은 "재산목록 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"로, "제201조제2항 단

<u>재무상태표</u>
· 제217조의6(준용규정) ① (현행과
같음)
②
·
재무상
태표
재무상태표
<u>, il 0 , il 1r</u>

서"는 "제217조의5제3항"으로,	
"주식"은 "지분증권"으로 본다.	
	<u>.</u>
제221조(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	제221조(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
청산) ① ~ ⑤ (생 략)	청산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203조(제2항을 제외한다)	6
는 투자합자조합의 청산에 관	
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"투자	<u>.</u>
회사"는 각각 "투자합자조합"	
으로, "재산목록과 <u>대차대조표</u>	재무상태표
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	
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	
등본을"은 "재산목록과 <u>대차대</u>	<u>재무상</u>
<u>조표</u> 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"로,	<u>태표</u>
"주주총회"는 "조합원총회"로,	
"청산인 및 청산감독인"은 "청	
산인"으로 본다.	
제239조(결산서류의 작성 등) ①	제239조(결산서류의 작성 등) ①
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	
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	
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	
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	
세서(이하 이 조에서 "결산서	
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	
다.	<u>.</u>
<u>1. 대차대조표</u>	<u>1. 재무상태표</u>

- 2. 3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- 제249조의18(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(이하 "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"이라 한 다)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 산총액[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 액(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 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] 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 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 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

2.・3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49조의18(상호출자제	ll 한기업집
단 계열 경영참여형	사모집합
투자기구 등에 대한	제한) ①
(현행과 같음)	
②	
<u>재무상태표</u>	

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 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 (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 국 기업은 제외한다)를 계열회 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 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 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1.	\sim	5.	(생	략)

$3 \cdot 4$	(생 략)
-------------	--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